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22 선고 2024가단1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주식회사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오훈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3. 1. 6. 접수 제1482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2023. 1. 6. 접수 제1481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다. 피고 E은 같은 등기소 2023. 7. 27. 접수 제56654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3. 7.

27. 접수 제56653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면서 그 주소지에서
사업경영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3. 7. 27.
접수 제56653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 C에게는 같은 등기소 2023. 1. 6. 접수 제1482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피고 D에게는 같은 등기소 2023. 1. 6. 접수

제1481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피고 E에게는 같은 등기소 2023. 7. 27. 접수 제56654호로 마친 공유자 지분 119분의 1.65에 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거래가액은 각 3,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 B는 2023. 7. 25.경 원고 계좌로 3,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를 나머지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에 관한 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별지